

# 책임강의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제정 1986.12. 3. 개정 2009. 7. 1. 개정 2019. 8. 1.  
개정 1992. 9.24. 개정 2012. 8. 1. 개정 2022. 9. 1.  
개정 2009. 3.1. 개정 2017. 6. 1. 개정 2024.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의 구분과 정의) 본 대학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수강의”라 함은 실험, 실습,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지도와 시범을 말한다.
2. “보통강의”라 함은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말한다.
3. “특별강의”라 함은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말한다.
4. “초과강의”라 함은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5. “시간강의”라 함은 본 대학 전임교원 이외의 자가 책임시간이 아닌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 (개정 : 2019. 8. 1)(개정: 2022. 9. 1)

제3조(강의료 지급기준) ① 강의료는 교원의 직위 및 강의의 구분에 따라 매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 ② 강의에 출장하기 위하여 숙박 또는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액의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 ③ 독립회계단위(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의 강의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책임강의시간) ① 본 대학 전임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은 9시간으로 하되, 인문사회학부 소속 전임교원은 12시간으로 한다.

-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본 대학 직제규정에 따른 보직 또는 입학사정관을 겸할 경우, 해당 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개정: 2017.6.1.)(개정: 2024.3.1.)

1. 부총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포항가속기연구소장 : 면제
  2. 산학협력단장, 처장 : 3시간
  3. 대학원장, 전문 및 특수 대학원장, 학과주임교수, 부처장, 독립채산기관장 : 6시간 (단, 인문사회학부장 : 9시간)
  4. 입학사정관 : 6시간 (단, 인문사회학부 소속 교원 : 9시간)
- ③ 전항의 보직교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강의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7.1.)(개정: 2017.6.1.)
1.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임교원의 경우 직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면제

2. 신규부임 2년 이내의 조교수의 경우 3시간 면제. 단, 학과 교과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면제가 가능

④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할 자에게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⑤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중 담당할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2(초과강의료) ① 본 대학 전임교원이 제4조 제1항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 전임교원 이외의 자의 초과강의료는 따로 정한다. (신설 : 2022. 9. 1 )

제5조(강의시간의 제한) 전임교원의 주당강의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담당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8.1)

제6조(강의료의 계산)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하되, 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보통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2. 강의료는 주단위로 계산한다. 단, 학기말 또는 학년말 종강의에 있어서는 1주 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
3. 비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시간강의료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9. 1 )
4.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8. 1)

제7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기간
2. 등록기간
3. 정규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전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
4.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실제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8. 1)

제8조(강의료 지급기일) 교원연봉제운영규정 제12조를 적용한다.(개정 : 2009.7.1)

제9조(타대학 출강) 본 대학의 교원이 타대학(연구원 포함)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대학의 담당시간수를 합하여 주당 담당 총시간수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2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